#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(윤종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1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윤종군・백혜련・김우영

허 영・김현정・서미화

소병훈 · 홍기원 · 이병진

박성준 · 김태선 · 한창민

임호선 · 남인순 · 안규백

강득구 · 천준호 의위

(17일)

### 제안이유

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고령화 등으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.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가장많은 광역자치단체(1,362만명)이지만,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는 전국평균(2.2명)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.8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인구대비 의대정원수는 의대 미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최하위(전국 평균 0.59명, 경기도 0.09명)인 상황임. 또한 경기도 내 시군구 별로 활동의사수의 편차가 심각해 성남의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3.61명인데반해 과천의 경우 0.71명으로 5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교 의대 가 3곳 모두 50명 미만의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고, 국립대학교 의대는 단 한곳도 없어 감염병 대응 및 응급환자, 중증질환자를 위한 양질의 필수·공공 의료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임.

이에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, 필수·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. 또한,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경기도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경기도에 위치한 한경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,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(안 제2조 및 제3조).
- 나.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지역공공의료과정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,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을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다.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(안 제10조).
- 라.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우선 채용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

하고, 경기도 내 병원 개설 시 보조 또는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 및 제14조).

마.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·설비 조성, 산업보건·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기금의 조성, 국·공유 재산의 무상 양여 등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, 제15조 및 제16 조).

##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기 도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「고등교육법」 제18조,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한경국립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 다. 다만, 입학자격·수업연한·교육과정·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등교육 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의 보건의료 실태에 관한 조사·연구, 정보의 수집·관리·활용·보호, 의료인의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을 통한 의료인 양성 및 부속병원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교류·협력을 촉진하고 상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입학정원) 교육부장관은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정

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- 제6조(예산지원 등) ①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시설·설비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산업보건· 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·운영에 드 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지역공공의료과정) ①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공공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,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(이하 "지 역공공의료과정"이라 한다)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 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.
  - ②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은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)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(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)을 선발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운영, 특별전형 관련 해당 지역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.

- 제8조(학비등의 지원)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(이하 "학비등"이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) ①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,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  - ②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(이하 "반환금"이라 한다)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이나 사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1. 퇴학한 사람
  - 2. 졸업 후 3년 이내에 「의료법」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
  - 3.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
  - ③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④ 그 밖에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0조(의무복무) ① 제8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「의료

- 법」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기도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복무(이하"의무복무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 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.
- 1.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
- 2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- 3. 「의료법」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
- 4.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런(이하 이 조에서 "전문의수련"이라 한다)을 받는 경우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수련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④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"군보건의료인",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"공중보건의사" 및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"공중보건의

사"로 복무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한다.

- 제11조(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의무복무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없다.
- 제12조(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)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 의무복무 중인 의사의 근무실적을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경기도지사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의무복무 중인 의사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가 이루 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) ① 국가와 경기도지사는 지역공공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, 경력개발 지원 등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경기도지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

권고할 수 있다.

- 제14조(의무복무 의사 병원 개설 시 지원) 국가와 경기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의사가 경기도 내 병원 개원 시 보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간호사 등 보조 인력 인건비 지원, 행정인력 고 용 지원,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15조(기금의 조성) ①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,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・관리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국·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 ① 국가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 의과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,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 다.
  - ②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.

대부하거나 사용 • 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여, 대부 또는 사용・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토지 등의 수용·사용) 경기도지사는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 대학의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한경국립대학교 공공의과대학의 설치, 입학정원 산정, 학생의 모집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